

## 상법 제360조의3(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)

④ 회사는 제363조(소집의 통지)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.5.20]

1.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
2. 제360조의5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
3.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

## 상법 제360조의5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

-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(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2015.12.1] [[시행일 2016.3.2]]
- ② 제360조의9(간이주식교환)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[본조신설 2001.7.24]

## 상법 제374조(영업양도, 양수, 임대등)

-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(정관변경의 특별결의)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. [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
  1. **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**
  2. **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·변경 또는 해약**
  3. **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**
-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.. [신설 95·12·29, 2014.5.20]

## 상법 제374조의2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

- ① 제374조(영업양도, 양수, 임대등)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(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2015.12.1] [[시행일 2016.3.2]]
-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매수청구기간"이라 한다)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12.1] [[시행일 2016.3.2]]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[개정 2001.7.24]
-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2001.7.24, 2015.12.1] [[시행일 2016.3.2]]
-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. [신설 2001.7.24]

[본조신설 1995.12.29]

[본조제목개정 2015.12.1] [[시행일 2016.3.2]]